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안)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2025. 01. 1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

논 산 시 장

- 1. 사 업 명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추가)
 - 2. 총사업비 : 24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잔여사업비 : 7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잔여예산범위내 추가모집(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선정예정)
 -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 (접수기간) 2024. 12. 27.(금) ~ 2025. 01. 10.(금)
(18:00까지(점심시간 및 휴일 제외))
 - 3.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사물인터넷 IoT 설치 비용
 - ※ 신청서 PDF파일, 신청내역(붙임) 엑셀은 이메일 (4059725@korea.kr) 제출
 - ※ 녹색환경센터 기술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항목·사업자 선정
- <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단위 : 만원)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4. 지원대상 및 조건

①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잔여예산범위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우선순위 대상) :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 ① 방지시설 면제 신청 습식시설
- ② 신규시설 중 4종
- ③ 신규시설 중 5종
- ④ 기존시설

※ 잔여 보조사업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신청이 된 경우 보조사업비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최우선하며, 차순위는 최근3년간 보조사업 비용을 적게 받은 업체 순으로 우선선정 할 예정임.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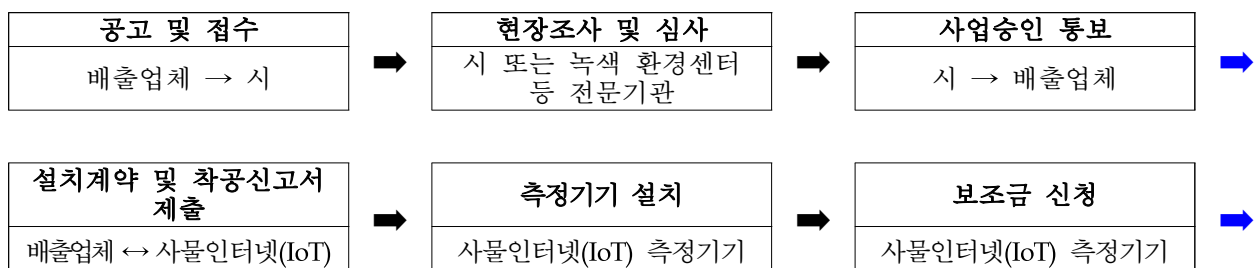
○ (보조금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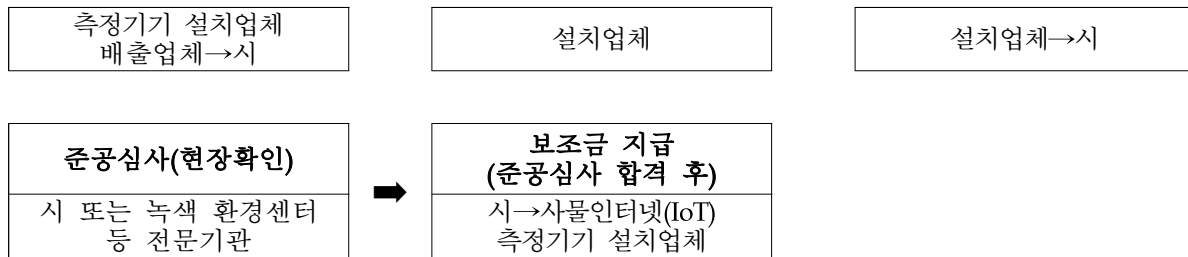
-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동일

※ 한 사업장에 측정기기 (IoT)부착 수량은 사업장 전체 소요량의 50%로 제한함.

5. 지원절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지원사업 >





6. 신청기간 : 2024. 12. 27.(금) ~ 2025. 01. 10.(금) [09:00~18:00까지]

※ (휴일 및 공휴일, 평일 12:00~13:00은 접수 제외)

7.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제외)
- 접수처 : 논산시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PDF파일 및 EXCEL서식은 이메일 제출)

8. 주요 구비서류 (※ 관련서류 1부 제출)- IOT관련 서류만 제출

- ①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2, 붙임2의1, 붙임2의2)
-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1부(참고 방지시설 설치단가 조사표 확인)
- * 공사원가계산서를 '24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④ 사업장 위치도 1부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 ⑦ 중소기업확인증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 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붙임 2의3)
- ⑨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소규모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1부(붙임 2의4, 붙임 2의5)
- 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저녹

스버너 지원사업 참여 신청시) 1부(붙임 2의6)

⑪ 이행확인서 1부(붙임 2의7)

⑫ 자체 방지사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사업장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 사업장 여건, 설치효과, 사업장의 개선노력 및 지원 시급성(필요성) 등을
논산시와 충남녹색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평가 후 사업자 선정

10. 계약체결 및 방지사설 설치

가. 계약체결 : 사업승인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 계약체결 후 환경전문공사
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통보하여야 함(서식 9, 10)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못 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
간내에서 연장 요청 가능(1회에 한함)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사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
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사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 「지방회계법」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사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
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11. 보조금 지급

-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식 11, 12)

* 설치완료 내역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성적서, 설계도,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중, 완료) 등

-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 하에(동의서 징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다음의 ‘가’, ‘나’ 및 ‘다’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다.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서식 17, 18)

12.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추진사항은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환경과(☎746-5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우리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단가 및 사물인터넷 설치 단가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 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0	2,970	1,650	1,320
		200㎥/분	4,700	4,230	2,350	1,880
		300㎥/분	6,300	5,670	3,150	2,520
		400㎥/분	7,500	6,750	3,750	3,000
		500㎥/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200	1,080	600	480
		200㎥/분	2,300	2,070	1,150	920
		300㎥/분	3,000	2,700	1,500	1,200
		400㎥/분	3,800	3,420	1,900	1,520
		500㎥/분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 지 용	100㎥/분	3,500	3,150	1,750	1,400
		200㎥/분	4,600	4,140	2,300	1,840
		300㎥/분	6,100	5,490	3,050	2,440
		400㎥/분	7,400	6,660	3,700	2,960
		500㎥/분	8,400	7,560	4,200	3,360
	가 스 용	100㎥/분	3,800	3,420	1,900	1,520
		200㎥/분	5,000	4,500	2,500	2,000
		300㎥/분	6,700	6,030	3,350	2,680
		400㎥/분	7,900	7,110	3,950	3,160
		500㎥/분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분	1,600	1,440	800	640
		200㎥/분	2,900	2,610	1,450	1,160
		300㎥/분	3,500	3,150	1,750	1,400
		400㎥/분	4,400	3,960	2,200	1,760
		500㎥/분	5,000	4,500	2,500	2,000
RTO		100㎥/분	14,500	13,050	7,250	5,800
		200㎥/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100㎥/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분	31,700	28,530	15,850	12,680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300m³/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m³/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m³/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100m³/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m³/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m³/분	33,200	29,880	16,600	13,280
	400m³/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m³/분	40,700	36,630	20,350	16,28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전기집진시설	100m³/분	19,100	17,190	9,550	7,640
	200m³/분	28,300	25,470	14,150	11,320
	300m³/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m³/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m³/분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m³/분	6,000	5,400	3,000	2,400
	200m³/분	8,900	8,010	4,450	3,560
	300m³/분	11,500	10,350	5,750	4,600
	400m³/분	14,100	12,690	7,050	5,640
	500m³/분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m³/분	2,697	2,427	1,349	1,079
	200m³/분	3,928	3,535	1,964	1,571
	300m³/분	4,787	4,308	2,394	1,915
	400m³/분	6,239	5,615	3,120	2,496
	500m³/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kcal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kcal, 1usRT는 3,024 kcal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6)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보조금 산정) 방z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z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 여과집진기 300m³/분 초과, 400m³/분 미만 방z시설 설치비는 300m³/분(6,028만원)과 400m³/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m³/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 300m³/분 설치비 + 10m³/분(7,593 - 6,028) /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m³/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 300m³/분 설치비 + 10m³/분(7,593 - 6,028) /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 ◇ 여과집진기 500m³/분 초과 방z시설 설치비는 500m³/분 방z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m³/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 시설용량 500m³/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m³/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m³/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 시설용량 500m³/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m³/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z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 ID팬(유입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제5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사설 및 ③방지사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사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사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①방지사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 중 4종, ③신규 시설 중 5종, ④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지원
-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비 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사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사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2.11.) 참조

- (설치시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방지사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모델명 기준)의 품질보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하여야 함. 다만,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KS인증으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0 ~ 600A ¹⁾	0 ~ 500mmH ₂ O ²⁾	-40 ~ 100℃ ³⁾	0 ~ 14pH
오차 ⁴⁾	±2.0% 이내	±0.5% 이내	±1.5℃ 또는 ±1.0%RD 중 큰 값	±0.6%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분해능	-	-	-	0.1pH 이하
공통사항	(출력신호 ⁵⁾) 4 ~ 20mA (표시장치 ⁶⁾)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1) 전류의 측정범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음
- 2) 압력의 측정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500mmH₂O 이상)
- 3) 온도의 측정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필요시, ~1,000℃ 적용)
- 4) 오차는 공인시험성적서 기준임
- 5)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장치사양

○ 전류계

구 분	사 양
측정범위	0 ~ 600A
출력신호	4 ~ 20mA
오차	±2% 이내
동작온도	-20 ~ 60℃
기타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1)을 표식하여야 함

1) 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송풍 1, 송풍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

○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0.5% 이내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동작온도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무게	1kg 이하(설치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무리가 없어야 함)

○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범위 및 타입	-40℃ ~ 100℃(필요시, ~1,000℃ 적용),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 값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동작온도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범위	0 ~ 14pH	pH 전극
사용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범위	0 ~ 14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신호	4 ~ 20mA	
온도보상	0 ~ 5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붙임 2의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현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치 대상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련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 류	규 격	수 량	비고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1. 보조금 반납 약약서(서식17) 1부.						

【붙임 2의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ز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논산시장 귀하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논산시장 귀하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사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사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논산시장 귀하

【서식 7】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승인결과 통보

귀하께서 신청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승인 사항대로 사업을 적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내역 >

사업자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⑤ 설치예정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			수 량	
⑥ 착공 및 준공예정일		2023. . ~ 2023.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⑦ 시설 설치비	만원		⑦ 예상 보조금	만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서식 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승인결과 통보

귀하께서 신청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승인 사항대로 사업을 적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내역 >

사업자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설치예정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		수 량	
⑤ 착공 및 준공예정일		2023. . ~ 2023.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⑥ 시설 설치비	만원	⑦ 예상 보조금	만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지원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서식 10】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 공 신 고 서

사 업 장 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팩 스	
설치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팩 스	
부 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체부담액	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논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계약서(사본)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4. 계약이행보증보험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서식 1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인	배출업체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⑤ 소재지		전화 팩스		
설치 내역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⑦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대 기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측정기기 종류	수 량	
신청 내용	⑧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⑨ 보조금 사업비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논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장 위치도 1부. -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 통장 사본(설치업체) -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서식 1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137-82-07000		홍길동		032-590-3610			
사업장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측정기기 부착일		년 월 일							
사물인터넷 설치 현황									
게이트웨이사(모델명)		00사(GD400)		VPN사		엘론/엠펙시스			
유선/무선		무선		모뎀번호(통신사)		010222333(LG)			
배출구	배출시설	방지시설	구분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1	용해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대수	1	1	1	1	1	1
1		여과집진	대수						
2	탈지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대수						
2		여과집진	대수						
측정기기의 부착을 완료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측정기기 설치 사진 1부									

측정기기 설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게이트웨이				
			제조사	모델명	신규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비고
1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적합/부적합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3.01.01.~2023.01.01. (2023.01.01.)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	점검항목	테스트 세부내용	테스트 결과
통신시험	수신자료	자료 수신	적합 / 부적합
	원격명령	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시설코드 변경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적합 / 부적합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시, 부적합)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설정정보 일치성	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	적합 / 부적합
	관계정보	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 가동 여부 판단	적합 / 부적합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업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첨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자동약식(Greenlink)]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관할지자체	
배출구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업종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배출구직경	가동개시일자	신설일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모델명	신규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게이트웨이IP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배출구 번호	시설 코드	시설명	분류	용량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가동 개시일자	신설일자
1	1	E3501	배출1	35) 도장시설	86.3 m ³	F0001		2020-01-01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시설명	종류	측정항목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시설	배출1	도장시설	1	1	1	1
	배출2	도금시설	1	-	-	1
방지시설	방지1	여과/흡착	1			
	방지2	흡수에 의한 시설	1			
송풍시설	송풍1	송풍(ID fan)	1			
	송풍1	송풍(ID fan)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적합/부적합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점검기간		
점검결과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점검시점	점검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적합/부적합

자료전송 정상여부	2023. 12. 01.		2023. 12. 02.		2023. 12. 03.		2023. 12. 04.		2023. 12. 05.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적합/부적합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28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적합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적합/부적합

No	코드	원격명령 시험내용	점검일자	점검결과	비고
1	PDUM	저장자료 요청	2023.12.01.	적합/부적합	
2	PFST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3	PCNG	설정정보 조회 요청		적합/부적합	
4	PSEP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적합/부적합	
5	PUPG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적합/부적합	
6	PVER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적합/부적합	
7	PSET	수동 시간 설정		적합/부적합	
8	PFCC	시설코드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9	PAST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10	PFGR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적합/부적합	
11	PFRS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적합/부적합	
12	PRSI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적합/부적합

시설명	계측기	개수	게이트웨이 설정값			GreenLink 등록값			점검 결과	비고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배출1	전류계	1							적합/부적합	
방지1	차압계	1							적합/부적합	
방지2	pH계	1							적합/부적합	
송풍2	전류계	1							적합/부적합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적합/부적합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설정/미설정	적합/부적합	배출시설	E0000	배출1	송풍시설	F0001	송풍1

[수동약식]

☐ 실시간 자료 (수신자료, 배출구별 수신자료)

“수신자료 조회” 화면
수신자료 조회
“배출구별 수신자료 조회” 화면
배출구별 수신자료 조회

☐ 실시간 자료 - 원격명령 - [신규]원격명령 관리

“저장자료 요청” 화면
저장자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화면
암호 변경 지시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화면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수동시간 설정” 화면
수동시간 설정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화면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설정정보 조회 요청” 화면
설정정보 조회 요청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화면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화면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화면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화면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서식 15】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논산시장 귀중

【서식 16】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위 임 장

수 입 자 (위임을 받는 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24. . ~ 2024. .

상기 위임자는 수입자에게 상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논산시장 귀중

【서식 17】

보조금 반납 약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사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사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사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약합니다

< 방지사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사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사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서식 1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보조금 반납 약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약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